

<b>보도</b>	<b>2023.10.13.(금) 조간</b>	<b>배포</b>	<b>2023.10.12.(목)</b>		
-----------	--------------------------	-----------	-----------------------	--	--

담당부서	은행검사1국 상시감시팀	책임자	국 장	김성욱	02-3145-7050
		담당자	팀 장	황준하	02-3145-7065
	은행검사2국 상시감시팀	책임자	국 장	백규정	02-3145-7200
		담당자	팀 장	김우현	02-3145-7210
	은행검사3국 기획상시감시팀	책임자	국 장	김정렬	02-3145-8350
		담당자	팀 장	김지웅	02-3145-8330

##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

### - 주요 내용 -

◇ **(점검 결과)** 은행권은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시 금감원이 요청한대로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점검을 실시

- \* ①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②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③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 1개월간에 걸친 점검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 금번 자체점검은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여 적정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

○ 이를 위해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하는 한편,

- 혁신방안 중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순환근무 예외 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혁신방안의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

○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

# I . 그간의 경과

□ 지난 8월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서의 거액 금융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사고예방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며,

○ 은행권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3가지 테마\*에 대해 지난 1개월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 ①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②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③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①~② 항목은 '23.8.31.까지 ③ 항목은 '23.9.15.까지 제출)

## ◇ 「은행권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방안(22.11.4)」<붙임> 참조

구 분	주요 내용
1.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가. 준법감시부서 인력규모·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나. 준법감시인 선임시 자격요건 강화 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
2.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가. 명령휴가 제도 나. 직무분리 제도 다. 내부고발자 제도 라.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
3.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가.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나.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다.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라.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4.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가.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나.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

# II . 점검 결과

## 1.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 (자체점검 결과) 은행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내용을 과제별 일정대로 추진중이며,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 특히, 금감원은 각 은행별로 미흡한 부분을 개별 은행(19개)과의 면담(23.9.25~10.13 중)을 실시하여 신속히 보완토록 지도하였습니다.

### [ 은행별 주요 미흡사례 ]

- ☑ (A은행) '장기근무 불가피성 및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 등 내규상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절차 시행이 지연됨 (☞ 추후 정기인사시 즉시 시행 예정)
  - ☑ (B은행)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가 있어 대상자 선정요건을 재점검하고 대상자를 추가할 예정이며,
    - 강제명령휴가대상이나 대체수단 휴가로 잘못 등록하는 사례가 있어 시스템상 강제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한 대체수단 등록 방지기능 추가
  - ☑ (C은행)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에 분리대상 세부 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하여야 하나, 인력 변동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미비하여 개선 예정
  - ☑ (D은행)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고발 유형별로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개선 예정
- (향후 계획) 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되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등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 ① (일부 과제 이행시기 조정)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의 목표 달성시한을 단축

- ①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 : '25년말까지 5% 이내 축소 → '24년말까지로 조정
- ② 준법감시부서 인력확대 : '27년말까지 0.8% 이상 확대 → '25년말까지로 조정
- ③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 : '24년말까지 PW 대체 인증방식 도입 → '24.6월말까지
- ④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 '24년말까지 중요사항 검증 의무화 → '24.6월말까지

#### ② (순환근무 예외 직원에 대한 별도 사고예방대책)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 중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장기근무시 승인제도 등 장기근무자 인사관리체계의 적용을 배제 (은행연합회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3조)

\*\*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특별 명령휴가제도 도입, 부서내 담당업무·기업 등 업무 순환, 영업(front)과 자금결제(back)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

## 2.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 **(자체점검 결과)** 은행권은 최근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 사고와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PF 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자체점검은 은행 전산원장상 PF대출 잔액·거래내역과 PF대출 차주, 대리은행, 신탁사 등을 통해 확인한 잔액·거래내역의 일치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점검결과, 부동산 PF 자금거래 상의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하는 14개 국내은행 (금감원 검사 진행중인 경남은행은 제외)
    - 금감원은 현재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 중으로 특히,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직접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금감원은 은행권 점검결과에 대한 재점검 외에 부동산 PF대출 업무 부문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절차가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체점검토록 하여,
  -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3.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 **(자체점검 결과)** 은행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대한 이행현황 이외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 은행권은 금감원에서 필수 점검항목으로 요청한 ①KPI 운영의 적정성 및 ②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 ③금융사고 유사사례 이외에도
    - ④횡령사고 개연성 높은 계좌 점검, ⑤영업 프로모션 관련 내부통제 점검, ⑥고위험업무 테마점검, ⑦내규준수의 적정성, ⑧내부감사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⑨내부통제조직의 적정성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하였습니다.

\* 관련 내규 보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 [ 은행별 사고예방 내부통제 자체점검 사례 ]

□ 은행별로 7개~23개의 항목을 자체점검 (은행별 평균 13개 항목)

- (A은행) 금감원이 필수 항목으로 요청한 항목 등을 포함해 총 22개의 항목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최근 KPI 실적이 높은 32개 영업점 점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특별 명령휴가를 실시\*

\* 영업점장에 대한 강제 명령휴가 실시 후 본부 직원을 통해 사고 여부 등을 점검

- (B은행) 필수 항목 등을 포함해 총 18개 항목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계약 업무\*, PB관리고객 잔액현황 통보 업무\*\* 등 고위험업무에 대해 중점점검

\* 계약 담당자의 장기근무로 거래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사적 이익 편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근무자에 대한 사무분담 변경, 물품구매 검수강화, 자점감사 항목 추가 등 개선 예정

\*\* 서류 조작 등 임의로 잔액통보 발송대상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잔액통보 업무 관련 WM고객부 직무 분리 추진, 반송우편물 영업점 처리 방식 강화 예정

- (C은행) 필수항목 등을 포함해 총 9개 항목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영업 과정에서 직원들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모션 관련 사고유발 요인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

- (D은행) 필수 항목 등을 포함해 총 9개 항목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각종 고객의 자금을 임시 예치하는 은행(영업점) 명의 계좌 관리의 적정성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영역에 대해 점검

□ (향후 계획) 금감원은 실제 각 은행이 마련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며,

- 실효성이 큰 모범사례\*는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요청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 (A은행) 영업점장 불시 명령휴가 실시 후 특별감사 실시

(B은행) 각종 영업과정에서 실시하는 프로모션 관련 내부통제 점검 등

### Ⅲ. 향후 계획

- 최근 은행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지속\*되는 것은 일부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 [은행권 임직원 횡령사고 추이]**

건수(건) : ('18년) 20 →('19년) 19 →('20년) 19 →('21년) 14 →('22년) 20 →('23.8월) 14

금액(억원) : ('18년) 24.2 →('19년) 67.5 →('20년) 8.2 →('21년) 72.8 →('22년) 739.7 →('23.8월) 612.6

-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은행권의 내부통제 자체점검은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여 걱정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 이를 위해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하는 한편,
    -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의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추가하는 등 혁신방안의 보완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내부통제 관련 경영실태평가(CAMEL-R) 제도 개편방안**

- ① (내부통제 평가비중 확대) 현재 경영관리(M) 하위항목인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항목(Internal Control)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 확대(예시 : 5.3%→10%)
  - ② (검사매뉴얼 확대·개편) 내부통제 혁신방안, 사고예방 장치의 적정성 평가 항목 등을 금감원 검사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폭 반영
- ⇒ 금융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 개정 추진 예정

※ 은행연합회 4개 모범규준 제개정('22년말), 은행 내규반영('23.4.1), 전산시스템 구축('23.7.1) 등 추진중

구 분	주요 내용
<b>가.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b>	
1. 준법감시부서 인력규모·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①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8% 이상 & 15명 이상(대형은행 기준) 확보 ② 부서 내 전문인력 20% 이상(주요 6개 분야 포함 필수) 확보 ※ '27년말(인력비율), '25년말(전문성 제고)까지 단계적 추진
2. 준법감시인 선임시 자격요건 강화	① 선임 시 자격요건에 관련업무(준법·감사·법무 등) 경력 추가 ※ '25.1.1일 이후 선임 시부터 시행
3.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	①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 이하로 관리 (현재 시중은행은 11.4% 수준) ②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 마련 - 장기근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임원으로 상향 - 장기근무 승인요건으로 1)불가피성, 2)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채무·투자현황 확인 등) 심사 의무화 ※ '25년말(관리비율)까지 이행
<b>나.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b>	
1. 명령휴가 제도	① 명령휴가 대상 본지점 고위험 직무 확대, 장기근무자 포함 ② 위험직무자 등 강제 명령휴가 의무화(일반 휴가 등 대체 불가) ※ '23.6월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2. 직무분리 제도	① 직무분리 대상 고위험 거래 범위 확대·구체화 ② 직무분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 '23.6월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3. 내부고발자 제도	① 내부고발 익명성 강화(내규상 실명신고 문구 삭제) ② 고발유형별 보상기준 다양화 ③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의무화
4.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	① 지점 이외 본점 부서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② 사고예방대책의 직무별·직급별 역할과 책임(R&R) 구체화 ③ 자점감사·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과 연계 ※ '23.7.1일(직무분석 필요)부터 시행
<b>다.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b>	
1.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① 비밀번호를 대체할 소유·생체기반 인증방식 도입 확대 ※ '23.1분기 중 세부 이행기준 마련 및 단계적 추진
2.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① 기업구조조정 관련 공동자금 채권단 검증 의무화
3.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① 기안→날인→지급시스템간 연계 체계 구축 ② 단계별 중요사항 검증 의무화(금액, 결제번호, 수신인 등) ※ '23.1분기 중 세부 이행기준 마련 및 단계적 추진
4.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① 수기 기안문서 전산 등록·문서번호 자동 부여 의무화 ② 수기 접수문서 활용 시 검증 체계 구축 ※ '23.7.1일(전산구축 필요)부터 시행
<b>라.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b>	
1.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① 상시감시 대상 본점까지 포함, 중요 이상지표 보고·처리·사후관리 체계 강화
2.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	① 자점감사 결과보고 체계화, 자점감사 부실징후 영업점 현장점검 절차 마련 등